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금융 및 금융감독 정책 수립·집행 체계 개편〉
■ 김현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770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현정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4. 9. 6.
3. 회부연월일 : 2024. 9. 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금융위원회가 국내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 기능을 동시에 수행함에 따라 금융산업정책 기능이 금융감독정책 기능을 압도하여 엄정한 금융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가 어려워진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국내 금융산업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감독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제고하고, 국내 금융산업정책과 국제금융정책 기능을 통합하여 경제정책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제2항제4호, 제27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현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현행	개정안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①①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부·처·청과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으로 하되,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 및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4. 「 <u>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u> 」 제3조에 따른 <u>금융위원회</u> 5.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6.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u>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u> 」----- <u>금융감독위원회</u> 및 제47조에 따른 <u>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u> 5. ~ 9. (현행과 같음)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

7.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우주항공청

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른 새만금개발청

③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관·차장·실장·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다만, 실장·국장 및 과장의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장·단장·부장·팀장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실장·국장 및 과장의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은 이 법을 적용할 때 실장·국장 및 과장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

③ ~ ⑩ (현행과 같음)

한다. 다만, 과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⑤ 행정각부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제34조제3항 및 제38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본부장을 포함한다)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차관보를 둘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에는 그 기관의 장, 차관(제29조제2항·제34조제3항 및 제38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본부장을 포함한다)·차장·실장·국장 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조사, 심사·평가 및 홍보 등을 통하여 그를 보좌하는 보좌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 다만, 과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경찰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만 해당한다)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補)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특정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 다만,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국장은 중앙행정기관마다 1명을 초과할 수 없다.

1.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외무공무원
2. 법무부: 검사
3. 국방부, 병무청 및 방위사업청: 현역군인
4. 행정안전부의 안전·재난 업무 담당: 소방공무원
5. 소방청: 소방공무원

⑦ 제6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보하는 경우 차관보·실장·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과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계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일반

직공무원 또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중 그 소관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 별로 100분의 2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는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

⑨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과 행정기관의 파견직위(파견된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를 말한다)에 보하는 공무원의 경우 실장·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과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계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⑩ 중앙행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차관보·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 대하여는 각각 적정한 직급 또는 직무등급을 배정하여야 한다.

제27조(기획재정부) ①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경제·재정정책의 수립·총괄·조정, 예산·기금의 편성·집행·

제27조(기획재정부) ① -----

성과관리, 화폐·외환·국고·정부회계·내국세제·관세·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국유재산·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기획재정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③ 내국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국세청을 둔다.

④ 국세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⑤ 관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출입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관세청을 둔다.

⑥ 관세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⑦ 정부가 행하는 물자(군수품을 제외한다)의 구매·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와 정부의 주요시설 공사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

-----금융-----

-----.

② ~ ⑩ (현행과 같음)

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조달청을 둔다. ⑧ 조달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⑨ 통계의 기준설정과 인구조사 및 각종 통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통계청을 둔다. ⑩ 통계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금융위원회의 소관사무 중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로 승계되는 사무를 제외한 업무(이하 “기획재정부승계사무”라 한다)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금융위원회의 사무와 관련된 총리령은 기획재정부령으로 본다.	

개정안은 안 제2조에서 현재 중앙행정기관인 금융위원회를 삭제하고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소비자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안 제27조에서는 기획재정부 소관 사무 중 ‘국제금융’을 ‘금융’으로 변경하고 있음.

이와 관련해서는 현행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기능과 동 개정안의 전제가 되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¹⁾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음.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²⁾(이하 “「금융위원회법」”이라 함)에 따라 금융정책,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 및 금융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한 중앙행정기관임.³⁾

「금융위원회법」 제17조는 금융위원회의 구체적인 소관사무로 금융에 관한 정책 및 제도,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제재, 금융기관의 설립·합병·전환·영업의 양수양도 및 경영 등의 인가·허가,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배상 등 피해구제 등을 규정⁴⁾하고 있음.

1) 의안번호 제2203771호, 김현정의원 대표발의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설치하여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慣行)을 확립하며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 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① 금융정책,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 및 금융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금융위원회를 둔다.

② 금융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 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제재(制裁)에 관한 사항
3.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전환, 영업의 양수·양도 및 경영 등의 인가·허가에 관한 사항
4.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에 관한 사항
5.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배상 등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6.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으로,5) 은행·금융투자업자·증권금융회사·보험회사 등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검사 결과에 따른 제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6), 금융위원회의 지도와 감독을 받고 있음.7)8)

동 규정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 및 금융감독 등 금융

-
8. 금융 및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양자 간 협상, 다자 간 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금융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한 사항
- 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금융감독원의 설립) ①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을 설립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무자본(無資本) 특수법인으로 한다.
- 6)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업무) 금융감독원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38조 각 호의 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2. 제1호의 검사 결과와 관련하여 이 법과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재
 3. 금융위원회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기관에 대한 업무지원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
- 제38조(검사 대상 기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 대행회사(名義改書代行會社)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5.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兼營與信業者)
 7.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8.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9.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
 10. 그 밖에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감독) 금융위원회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업무·운영·관리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금융감독원의 정관 변경에 대한 승인
 2. 금융감독원의 예산 및 결산 승인
 3. 그 밖에 금융감독원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8) 금융위원회에 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에 관하여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을 지도·감독하도록 되어 있음.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증권선물위원회의 설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증권선물위원회를 둔다.
1.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2. 기업회계의 기준 및 회계감리에 관한 업무
 3. 금융위원회 소관 사무 중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한 사전 심의
 4.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을 위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증권선물위원회에 부여된 업무
- 제23조(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감독)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9조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을 지도·감독한다.

정책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이고, 금융감독원은 중앙행정기관인 금융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감독정책을 집행하는 공적 민간기구라 할 수 있음.⁹⁾

2008년 이후 유지되고 있는 현행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집행 기구 체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편 필요성에 대한 의견들이 제기되어 왔음.

[금융정책 및 감독집행 기구 연혁]

시 기	국제금융	국내금융		감독집행
		금융정책	감독정책	
1998.4. 이전	재정경제원			은행·증권·보험감독원
1998.4 ~ 2008.2.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	금융감독원
2008.2. 이후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자료: 행정안전부

개편 필요성을 제기하는 주된 이유는, 금융위원회의 담당 정책 측면에서, 금융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도모하는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 및 소비자보호가 목적인 금융감독정책은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야 하나, 금융위원회가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을 동시에 관장하고 있어 금융감독이 금융산업을 견제할 수 없고,

또한 금융감독 측면에서도 감독정책(금융위원회)과 감독집행(금융감독원)이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는바, 이로 인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의

9) 김경신, 이수환, “우리나라 금융감독 체계개편 필요성 및 입법과제”, 국회입법조사처, NARS 현안분석 제 173호, p.11. 참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금융사고의 책임을 서로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임.¹⁰⁾

현행 체계에 대한 문제점 제기에 따라 동 개정안 및 개정안과 함께 발의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¹¹⁾은 다음과 같이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집행 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

먼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따른 주요 조직 개편안을 살펴보면, 법률의 제명을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금융감독기구로서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및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규정하고 있음.¹²⁾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소비자위원회는 현행 금융위원회를 폐지하고 신규로 설치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각각 금융감독정책과 금융소비자 보호정책을 담당하게 됨.¹³⁾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금융

10) 김정신, 이수환, “우리나라 금융감독 체계개편 필요성 및 입법과제”, 국회입법조사처, NARS 현안분석 제173호, p.2-8. 참고

11) 의안번호 제2203771호, 김현정의원 대표발의

1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3771호, 김현정의원 대표발의)
제명 변경: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및 금융소비자보호원(이하 “금융감독기구”라 한다)을 설치하여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慣行)을 확립하며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소비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3771호, 김현정의원 대표발의)
제3조(금융감독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①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대한 감독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금융감독위원회를 둔다.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제47조(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① 금융기관의 영업행위와 자본시장에 대한 감독 업무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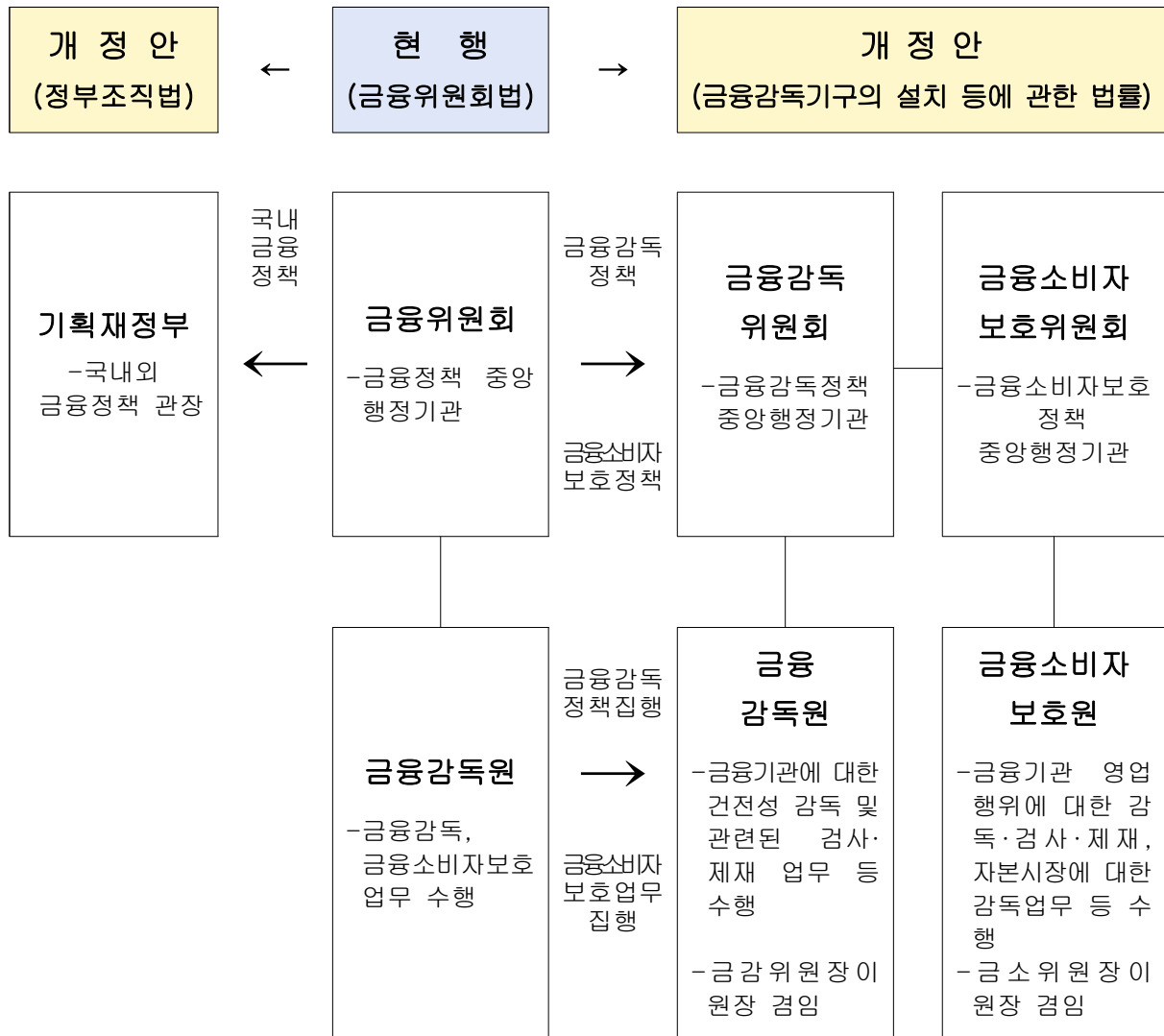
감독정책과 금융소비자보호정책의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무자본 특수법인으로,¹⁴⁾ 각각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지도·감독¹⁵⁾을 받으며, 동 위원회들의 위원장이 각각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원장을 겸임¹⁶⁾하도록 하고 있음.

동 개정안은 「정부조직법」에 이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에서는 「정부조직법」 외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중앙행정기관에서 현행 금융위원회를 삭제하고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소비자위원회를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27조에서는 금융위원회가 담당하던 국내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¹⁷⁾로 이관하여 국내외 금융정책을 총괄

-
-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둔다.
- ②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 1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203771호, 김현정의원 대표발의)
제19조(금융감독원의 설립) ① 금융감독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 및 이와 관련된 검사·제재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을 설립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무자본(無資本) 특수법인으로 한다.
- 제68조(금융소비자보호원의 설립)** ①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기관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검사·제재 업무와 자본시장에 대한 감독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한다.
 ② 금융소비자보호원은 무자본(無資本) 특수법인으로 한다.
- 1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203771호, 김현정의원 대표발의)
제18조(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감독) 금융감독위원회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업무·운영·관리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금융감독원의 정관 변경에 대한 승인
 2. 그 밖에 금융감독원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2조(금융소비자보호원에 대한 지도·감독)**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업무·운영·관리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정관 변경에 대한 승인
 2. 그 밖에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16)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203771호, 김현정의원 대표발의)
제24조(집행간부 등) ① (생략)
 ②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감원장”이라 한다)을 겸임한다.
 ③~⑥ (생략)
- 제73조(집행간부 등)** ① (생략)
 ②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원장(이하 “금소원장”이라 한다)을 겸임한다.
 ③~⑥ (생략)
- 17) 「정부조직법」 제27조(기획재정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경제·재정정책의 수립·총괄·조정,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 화폐·외환·국고·정부회계·내국세제·관세·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국유재산·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⑩ (생략)

하게 함으로써, 국제금융과 국내금융 간 상호 업무 연계성을 강화하고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국가경제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타당한
 입법취지로 보임.

【김현정의원 발의 법률안에 따른 주요 금융감독체계 개편안】



다만, 동 개정안의 심사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의 분리 필요성을 제기하는 의견들은, 금융감독기관의 법정형태와 관련하여 민간기구 편제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의견이 나뉘는 측면이 있음. 동 의견들에 따르면 금융감독기관의 법적형태에 대하여 민간조직화, 전부 또는 일부 정부조직화 등 다양한 유형을 고려할 수 있어 각 유형들의 장단점 등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¹⁸⁾

둘째, 동 개정안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동 법률안의 해당 상임위원회인 정부위원회의 심사 경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임.

18) □ 현재 금융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은 정부조직이 아닌 공적 민간기구임에도 실질적으로 감독업무에 있어 정책기관인 금융위원회로부터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아니한 바, 민간기구 편제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음.

○ 금융감독기관을 민간조직으로 편제해야 한다는 의견은 ① 영국의 PRA와 FCA도 정부로부터 독립된 감독기구로서 모두 공적인 민간기관에 해당한다는 점, ② 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행정조직은 한국은행과 같이 입법기관인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에 의해서도 설치될 수 있다는 점, ③ 무자본 특수법인과 같은 영조물법인은 국가간접행정기관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민간조직으로 운영할 경우 금융감독의 전문성 확보에 용이하다는 점, ⑤ 금융감독권한을 민간기관에 부여함으로써 보다 시장친화적인 금융감독을 수행할 수 있으며, 관치금융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고 있음.

○ 금융감독기관을 정부조직으로 두어야 한다는 의견은 ① 중앙행정기관인 행정 부처만이 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외의 기관이나 단체가 행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점, ② 조사실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신분이 민간인일 경우에는 조사능력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 ③ 금융감독기관을 민간기구로 운영할 경우에는 업무수행상 정부의 협조를 얻어내기 상대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점, ④ 민간기구라는 법적 형태는 감독업무 수행에 있어서 감독기구로서의 위상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 ⑤ 민간기구도 관료주의화 될 수 있다는 점, ⑥ 감독 관료조직도 외부경력자를 채용함으로써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고 있음.

□ 금융감독기관의 법적 형태(민간조직화 또는 전부·일부 정부조직화)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다양한 유형의 개편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는바, 금융감독의 효율성·전문성 확보, 감독기관의 책임성 강화, 금융시장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성 등이 주요 고려요소가 되어야 할 것임.

○ 금융감독 체계 개편 방안으로 ① 비정부 민간조직으로 편제하는 방안, ② 금융범죄 조사와 같은 일부 기능을 정부조직화(금융조사청) 하고, 건전성 감독이나 영업행위 규제 등의 업무는 민간 조직이 수행하는 방안, ③ 금융감독기관을 정부조직(금융감독청)으로 일체화 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음.

(김경신, 이수환, “우리나라 금융감독 체계개편 필요성 및 입법과제”, 국회입법조사처, NARS 현안분석 제173호, p.12-12. 참고)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국내금융과 국제금융 간 정책 협력체계를 실질적으로 활성화하는 한편, 국내금융 정책의 수행 기관에 대해서는 각각의 대안에 대한 충분한 비교·분석과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중장기적 시각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며,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에 대한 임의적 구분으로 사무소관·업무책임이 불분명, 금융행정의 효과성 저하, 빈번한 금융사고 발생, 위기대응 능력 저하 등이 우려되고, 많은 다수 기관이 금융행정업무를 분할 수행함에 따라 금융행정체계가 과도하게 복잡해질 수 있다는 의견 등을 제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339